

제17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장소 등 공고

2011년 6월 25일(토) 시행 제17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장소·시간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. 1차 장소공고

구분	응시번호	시험장소	소재지 및 교통편	시험본부
서울	100001~101686	휘문고등학교	서울 강남구 대치동 952-1 소재 ※ 지하철 : 2호선 삼성역에서 하차하여 ③, ④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0분 ※ 버스 : 2413, 3422, 4411, 143, 363	글로벌홀 (체육관연)
	101687~102552	휘문중학교		
대전	200001~200221	우송대학교 (서캠퍼스 공학관 3층)	대전 동구 자양동 155-3 소재 (서캠퍼스 공학관) ※ 지하철 : 대동(우송대)역에서 하차하여 ⑦번 출구 (도보 25~30분, 택시 6분 소요) ※ 버스 102, 103, 311, 605, 701	공학관 B304호

구분	응시번호	시험장소	소재지 및 교통편	시험본부
대구	300001~300194	대구관광 고등학교	대구광역시 동구 선암로 53(신암동 80) 소재[신암선열공원 옆] ※ 지하철 :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에 서도보로 15분 ※ 버스 : 101, 101-1, 323, 323-1, 401, 618, 805, 808, 814, 836, 980, 동구1, 동구1-1, 동구3, 북구3, 팔공1	본관 2층 1-1반, 1-2반 2개 교실
부산	400001~400317	동래 중학교	부산 동래구 삼성대 7길 117(명륜1동 661-10) 소재 ※ 지하철 : 1호선 명륜동역 ②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※ 버스 210	1층 수학2 교과실
광주	500001~500194	충장 중학교	광주 동구 산수동 552-6 소재 ※ 버스 : 산수오거리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8'10분 ○ 산수우체국정류장 : 금남55 ○ 산수오거리(북)정류장 : 순환01, 지원15, 봉선27, 일곡28, 송암74, 문흥80, 충효187, 공항버스1000 ○ 산수오거리(남)정류장: 1187	후관동 1층 1 - 1반

2. 시험과목

구분	시험시간	시험과목
1교시	10 : 00 ~ 11 : 40 (시간연장 장애인10:00~12:00)	제1과목(헌법, 상법) 제2과목(민법,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)
2교시	14 : 00 ~ 15 : 40 (시간연장 장애인14:00~16:00)	제3과목(민사집행법,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) 제4과목(부동산등기법, 공탁법)

※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.

3. 응시자 준수사항

가. 시험당일 09:30까지(2교시 13:30까지)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(07:30 이후 시험실 개방)

나.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 하나)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

※ 학생증,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
[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(<http://exam.scourt.go.kr/>)나의시험관리/응시표출력)에서 시험당일인 2011. 6. 25까지 재출력 가능]

다.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『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』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(사인펜에 "컴퓨터용"으로 표시되어 있음)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
※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라.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배탈,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(다음 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)

마.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시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, 응시자는 답안 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의 퇴실할 수 없습니다.

바.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와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퇴실한 응시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사.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됩니다.

아.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, 통신장비(무선호출기·휴대전화기·이러폰·MP3플레이어, PMP 등) 및 전산기기(전자계산기·전자수첩 등)를 휴대할 수 없으며,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.

자.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

차.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, 교통편,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)

※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

카. 응시대상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시험실을 포함한 건물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험장(학교)의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파. 응시자 준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도중이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,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.

4. 합격자 발표

가.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: 2011. 8. 3.(수)

나.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은 대법원 시험 정보 사이트(<http://exam.scourt.go.kr>)에 공고합니다.

다. 시험성적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(<http://exam.scourt.go.kr>/나 의시험관리/성적확인)에서 2011. 8. 3.(수) ~ 2011. 11. 2.(수)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※ 우편·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습니다.